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3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7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수도요금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수돗물 과다 사용에 대한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·보완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안 제28조 제3항의 수도요금 분할납부 가능한 사유 중 ‘과다한 수도 사용’ 내용을 삭제함(안 제28조 제3항 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누수,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. 다만,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8조(납부기한과 징수방법) ① ~ ② (생략)	제28조(납부기한과 징수방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	제28조(납부기한과 징수방법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③ <u>과다한 수도 사용, 누수,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.</u>	③ <u>누수,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. 다만,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</u>

#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누수,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. 다만,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납부기한과 징수방법) ① ~ ②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28조(납부기한과 징수방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누수,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. 다만,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</u>